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항 주변 장애물 관리에 대한 공항시설법령이 개정(시행 2023. 10. 19.)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안 제75조)

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자구 수정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항시설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칙 제18조의 규정”을 “규칙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을 “영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공항운영자 및”을 “공항 및”으로, “공항운영자에”를 “공항에”로 한다. 제3조제58호 및 제6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1호 중 “안전성과지표를 감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값”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4호 중 “위험관리과정”을 “위험도 관리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8호, 제70호 및 제1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4호의1을 제124호의2로 한다.

58.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0.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2.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8. “위험도(Risk)”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70. “위해요인(Hazard)”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2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공항시설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 제32조의 절차”를 “규칙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한다.

제22조 중 “이 기준 제2장 내지 제4장 8절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를 “제2장부터 제4장까지를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제27조의 규정”을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정기교육훈련으로 동일한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항운영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점검사항이 포함된 이동지역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마찰측성”을 “마찰측정”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표”를 “표”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34조제8항, 규칙 제25조의 규정”을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25조”로 한다.

제10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공항운영자”를 “공항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3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10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17조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1에서 정하는”을 “별표 11에 따른”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제128조의 규정”을 “제1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에 따른 요건”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2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제1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14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특별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6조제1호 단서 중 “그러지”를 “그러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때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후 특별점검을 실시 할 것”을 “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6조의 규정”을 “제146조”로 한다.

제148조제1항 중 “제145조의 규정”을 “제145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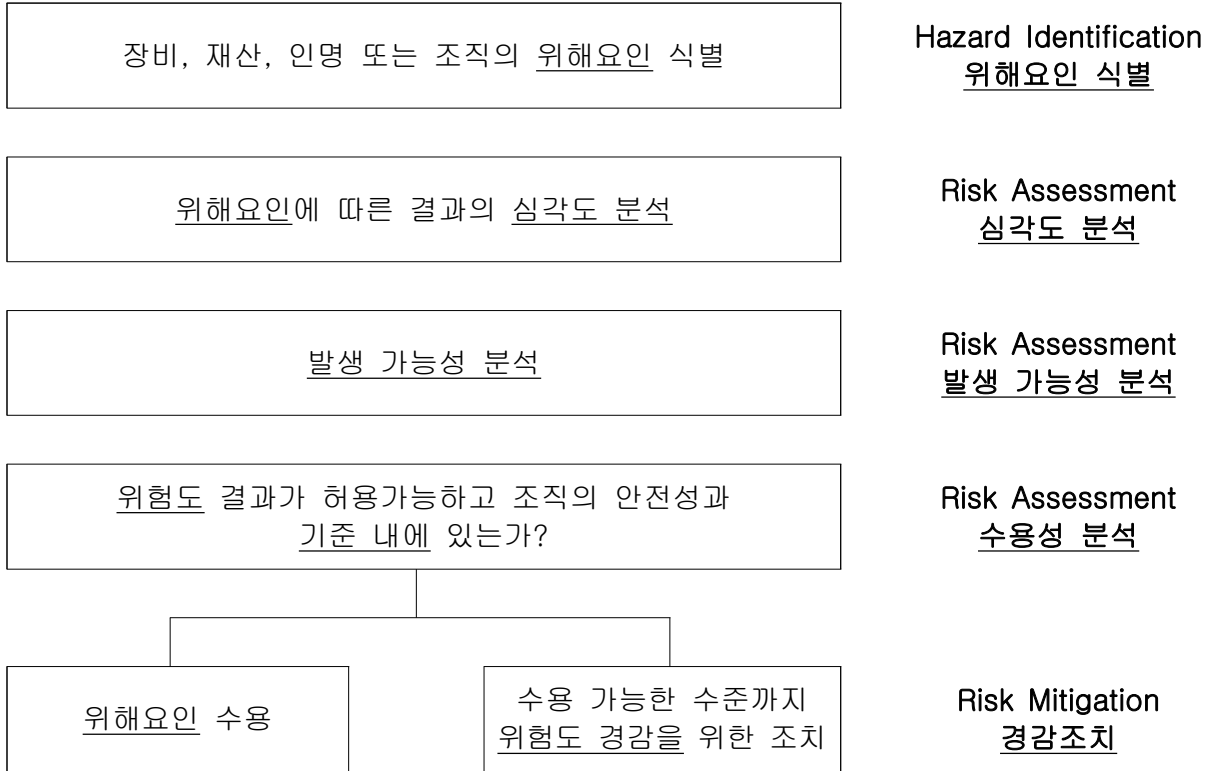
제149조 중 “제148조의 규정”을 “제148조”로 한다.

제15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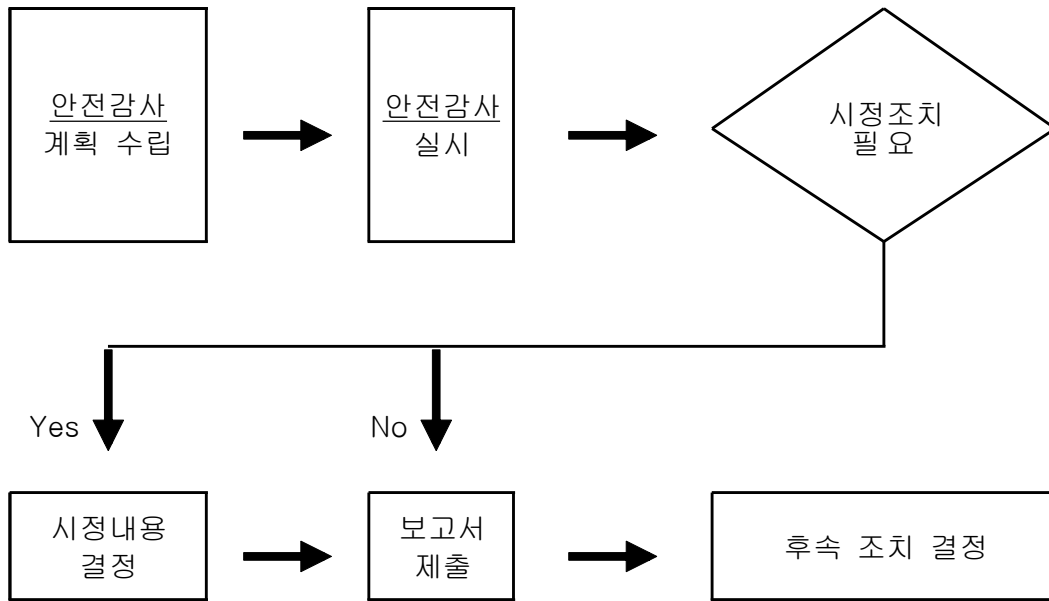
제15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기준”을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제1호의”를 “제5항제1호에”로 한다.

제165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위험요인관리와 위험성”을 “위해요인 관리와 위험도”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초등조치”를 “초동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험관리”를 “위험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위험요소”를 “위해요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위험평가 및 위험저감절차”를 “위험도 평가 및 경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위험저감 방안”을 “경감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위험요소”를 각각 “위해요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별표 13에서 정한”을 “별표 13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8)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도 관리절차 (Risk Management Process)>



제165조제7항제7호 중 “위험 평가 및 저감절차”를 “위험도 관리”로, “위험요소”를 “위해요인”으로, “위험관리”를 “위험도 관리”로 하고, 같은 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위험요소”를 “위해요인”으로, “수용성검토표”를 “수용성 검토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라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제8항제3호 중 “변경관리절차”를 “변화관리절차”로, “변경절차”를 “변화관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하여 분야별로”로, “보수교육 등을”을 “보수 등의 교육 훈련을 다음과 같이”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초기교육훈련 : 신규 담당자에게 SMS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3일 이상 시행
- (2) 정기 및 보수교육훈련 : 초기교육훈련의 재교육 또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2일 이상 시행

제165조제9항제3호가목(4)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공정문화 (Just Culture)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운영체계등의 특

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

제170조제2호 중 “제174조의 규정”을 “제174조”로 한다.

제18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절차를 「공항 내 위험물 취급매뉴얼」”을 “절차를 「공항 내 위험물 취급매뉴얼」”로 한다.

제191조제1항 중 “받은날”을 “받은 날”로 한다.

제193조 중 “이 규정의”를 “제6장에 따른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로,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201조제3항 중 “자료를지방항공청에”를 “자료를 지방항공청장에게”로 한다.

제2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보안관리

제238조 앞에 “제4절 보안관리”를 삭제한다.

제23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보칙

제239조 앞에 “제5절 보칙”을 삭제한다.

제27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에 따른 교육과목”을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목”으로, “교육시간”을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훈련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실시”를 “교육훈련 실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생”을 “교육훈련생”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마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깜박이는 녹색신호	착륙을 준비할 것 (착륙 및 지상유도를 위한 허가가 뒤이어 발부)	지상 이동을 허가함	통과하거나 진행할 것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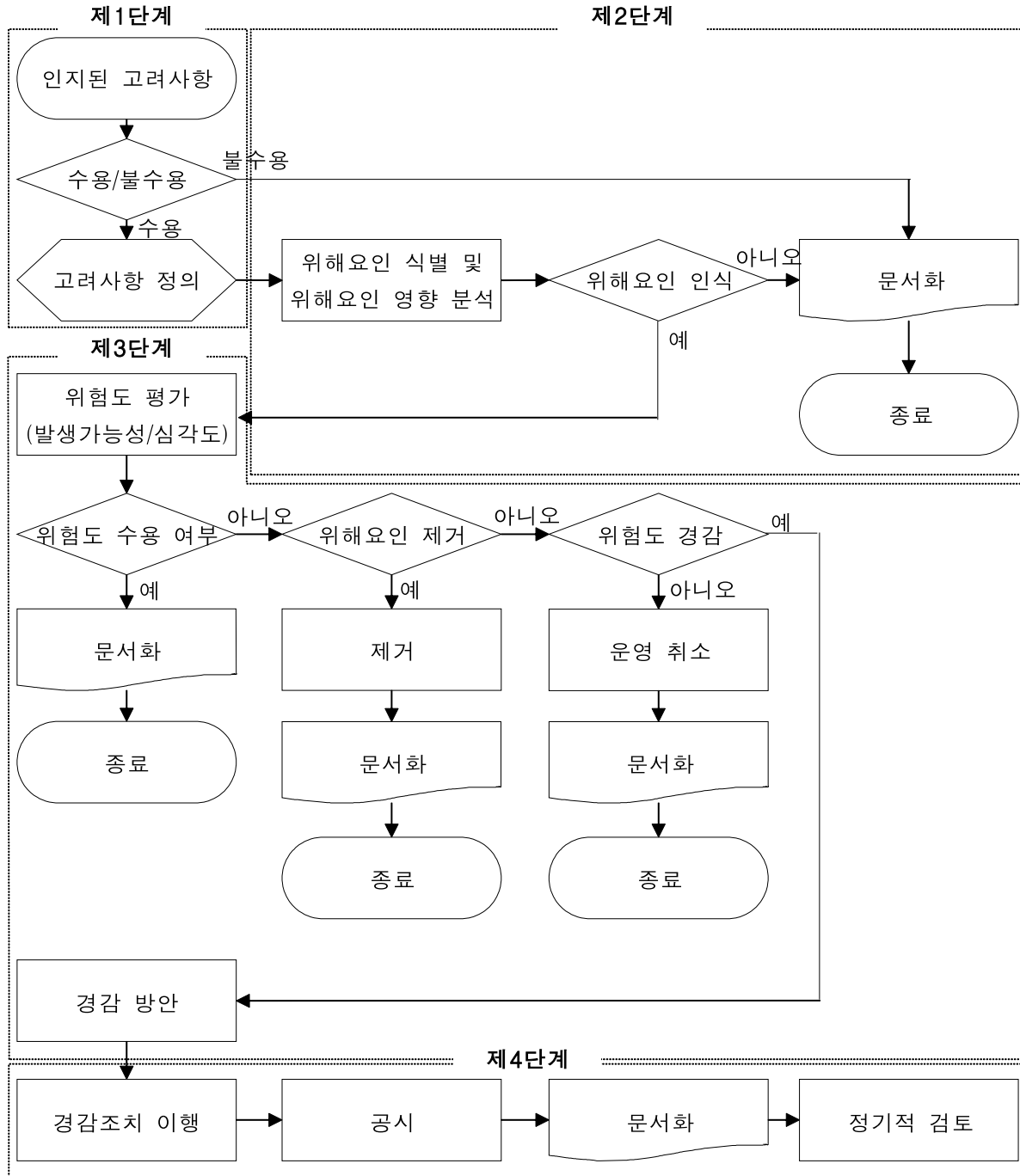
별표 3 제3호마목 표의 깜박이는 적색신호의 의미의 비행 중인 항공기란 중 “착륙”을 “공항이 불안정하니 착륙”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4] 안전평가 처리절차(제165조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 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38조의</u> 규정에 의거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p> <p>2.·3. (생략)</p> <p>4. 제8장(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30조 및 <u>규칙 제18조의</u> 규정에 따라 공항 내 지하에 시설된 각종 관로시설에 대한 도면작성, 비치 등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구축·관리하는 방법과 해당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p> <p>5. 제9장(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2조</p>	<p>제1조(목적) ----- -----.</p> <p>1. ----- ----- ----- ----- <u>제38조에 따라</u> ----- ----- ----- -----</p> <p>2.·3. (현행과 같음)</p> <p>4. ----- ----- <u>규칙 제18조</u>----- ----- ----- ----- -----</p> <p>5. ----- -----</p>

및 영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항기본시설 중 여객의 위탁
수하물을 신속·정확하게 분
류하여 운송하는 공항의 수하
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
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안전관리시스
템)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운영자 및 공항운영
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에 적
용한다.

2. ~ 5. (생략)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7. (생략)

58. “안전관리시스템(SMS, Saf
ety management system)”이
란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의
구성, 책임, 정책 및 절차를 포
합하는 조직적 접근방법을 말

--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

제2조(적용대상) -----
-----.

1. -----

--- 법 제38조에 따라 ----

-- 공항 및 -----
----- 공항에 -----
-----.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
-----.

1. ~ 57. (현행과 같음)

58. “안전관리시스템(SMS, Saf
ety management system)”이
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
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6호에
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한다.

59. (생략)

60. “안전목표(Safety Goal)”란 수용가능한 안전도(안전성과 지표 및 안전 성과목표, 안전 기준)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6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안전성과 지표를 감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값을 말한다.

62.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s)”란 관리대상항목의 현재 안전수준 또는 실태를 나타내는 척도 또는 기준값을 말한다.

63. (생략)

64.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란 기준 및 규정과 서로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또는 기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SMS) 위험관리과정의 일부분을 말한다.

59. (현행과 같음)

60.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1. -----
----- 국가항공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
시)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사
항-----.

62.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3. (현행과 같음)

64. -----

----- 위험도 관리
과정-----.

65. ~ 67. (생략)

68. “위험(Risk)”이란 위험요소(Hazard)로 인한 잠재적 영향으로 심각도(Severity)와 확률(Probability)로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69. (생략)

70. “위험요소(Hazard)”란 인명의 피해(부상, 사망 등),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71. ~ 121. (생략)

12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123. · 124. (생략)

124의1. (생략)

125. ~ 141. (생략)

제5조(공항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65. ~ 67. (현행과 같음)

68. “위험도(Risk)”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9. (현행과 같음)

70. “위해요인(Hazard)”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71. ~ 121. (현행과 같음)

12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23. · 124. (현행과 같음)

124의2. (현행 제124호의1과 같음)

125. ~ 141. (현행과 같음)

제5조(공항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 증명을 받은 후 공항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7조(공항 및 활주로 표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항 및 활주로 표고 등을 측정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8조(공항 표준온도)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항 표준온도를 정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9조(공항 제원 및 관련정보)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공항 제원 및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 지정)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

-----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공항 및 활주로 표고) ----- 각 호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공항 표준온도) ----- 각 호에 따라 -----

1.·2. (현행과 같음)

제9조(공항 제원 및 관련정보) ① ----- 각 호에 따른 -----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 지정) ----- 각 호에

의 기준에 의하여 1개 이상의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7조(공항상태보고의 기록 및 보관) 공항운영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내용을 기록하고 최소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일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에는 공항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고, 관계직원이 안전에 관련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9조(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수공항정보 1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을 별지 제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공항상태보고의 기록 및 보관) ----- 제16조제2항에 따라 -----

-----.

제18조(일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

2호 서식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1부를 포함하여 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변경 필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규칙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1조(공항운영규정의 작성방법)

① (생략)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어야 한다.

③ (생략)

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

④ -----

----- 규칙 제32조 -----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공항운영규정의 작성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단서에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각 호 -----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⑤ (생략)

제22조(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 공항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 작성요령은 이 기준 제2장 내지 제4장 8절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8조(교육훈련) ① 공항운영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를 위하여 자체검사자, 구조 및 소방 직원, 계류장 관리업무 및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 및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업무와 관련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소방직원과 계류장 관리업무,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 및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업무와 관련된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 -----

----- 제2장부터 제4장까지를 따른다.

제28조(교육훈련) ① -----
-- 제27조-----

-----.

② 제1항-----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는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초기교육훈련 내용의 재교육훈련, 소관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 1주(2년 주기) <단서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는 자격부여, 정기 및 재자격부여 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자체검사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여금 자체검사자 업무를 다시 수행

-----.

1. 2. (현행과 같음)
 3. -----

-----.
- 다만,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정기교육훈련으로 동일한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

-----.

1. 2. (현행과 같음)
3. -----

하게 할 경우에는 재교육 1주.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훈련으로 대체 가능

④ ~ ⑥ (생략)

⑦ 공항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을 최소 12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점검방법) ① 공항운영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최소 점검사항을 포함한 이동지역 점검표(공사 자체 점검표임/공항 운영규정 별지1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2조(포장지역 점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지역 점검 중 활주로 시단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3조(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

----- 제2호에 따른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2항에 따른

제30조(점검방법) ① 공항운영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점검사항이 포함된 이동지역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포장지역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

함) 점검)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초작업을 하는 때에는 풀의 높이에 대하여 착륙대내에서 약 15cm 이내로 유지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약 15 내지 2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의 생태환경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기초한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에는 잘려진 풀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34조(이동지역 내 지장물 상태

점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중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지장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별표 20과 같이 지장물(FOD)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적인 지장물을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 해당 지장물에 대한 적절한 표지 및 장애등 설치 등의 필요

함)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

-----.

④ 제2항에 따라 -----

-----.

제34조(이동지역 내 지장물 상태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③ 제2항에 따른 -----

-----.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활주로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 ③ (생략)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상에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가 있는 경우에는 활주로 표면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7조(활주로 표면 마찰측정) ① (생략)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마찰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2. (생략)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마찰측정의 경우에는 마찰측정 바퀴에 동일한 양(수심 1mm)의 물을 일정하게 공급하여 건조한 활주로(Dry runway)를 인위적으로 젖어있는 활주로(Wet runway)상태로 만들 수 있는 자동살수(Self-wetting) 기능이 구비되고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

제35조(활주로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음 -----

-----.

1. ~ 3. (현행과 같음)

제37조(활주로 표면 마찰측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사용하여야 하며, 측정 빈도는 활주로 표면 마찰측성의 경향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비가 오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추가적인 마찰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마찰측정 결과를 우선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39조(도면의 관리)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각지원시설의 도면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2조(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47조(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① (생략)

----- 마찰측정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도면의 관리) -----

----- 각 호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제47조(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수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③ ~ ⑥ (생략)

제62조(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③ (생략)

제63조(계류장 청결유지) 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 오염물질 및 파편 등에 의한 항공기 엔진손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류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을 포함한 계류장 청결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5조(장애물 관리) 공항운영자는 법 제34조제8항,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표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계류장 청결유지)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라 -----

-----.

제75조(장애물 관리) -----
--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25조-----
-----.

제104조(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전기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0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중선로(duplicate feeder)를 사용하여 예비전원을 공급하는 공항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전기적으로 분리(이중 모선구성)하여야 한다.
3. ~ 6. (생략)

제117조(책임사항) ① ~ ④ (생략)

⑤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 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7조(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 할 최소 구조장비는 별표 9와 같다.

제104조(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 공항운영자-----

1. (현행과 같음)
2. 제103조제2항제2호-----
3. ~ 6. (현행과 같음)

제117조(책임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3항에 따라 -----

제127조(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③ 공항운영자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최소 비상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8조(비상대응 요건) ①·② (생략)

③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 차량의 차량의 수명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장비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29조(비상 접근 도로) ① 공항 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 차량이 제128조의 규정에 따른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0조(소방대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소방대로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할

③ ----- 별표 11에 따른 -----

-----.

제128조(비상대응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항에 따른 -----

-----.

제129조(비상 접근 도로) ① -----

제128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른 요건-----
-----.

제130조(소방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수 없을 때에는 보조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32조(차량준비 요건)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 할 최소 구조장비목록 및 구조 및 소방차량의 최소 성능요건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소방차량은 약천후 시 비포장지역에서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4조(구조 및 소방 직원)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소방차량 탑승인원은 차량의 성능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12월 이내에 구조 및 소방관련 업무경험을 지닌 자 또는 최근 12월 이내에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소방에 관한 교육훈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차량준비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③ 제1항에 따른 -----

-----.

제134조(구조 및 소방 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④ 제2항에 따라 -----

----- 제136조에 따른 -----

련을 이수한 자로 편조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136조(구조 및 소방직원의 교육 훈련) ① 공항운영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훈련하여야 하며, 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② ~ ⑥ (생략)

제141조(활주로 침범 방지) ① (생략)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활주로 침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③ ~ ⑦ (생략)

제145조(자체 안전점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입주업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6조(구조 및 소방직원의 교육 훈련) ① ----- 제28조에 따라 -----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1조(활주로 침범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에 따라 -----

1.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5조(자체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긴급한 특별점검의 경우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위하여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제146조(점검 시기) 제145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ClassIV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사 작업 중이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악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인 때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3. (생략)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른

--.

④ 제1항에 따른 -----

-----.

1. ~ 12. (현행과 같음)

제146조(점검 시기) -----

--.

1. -----

-----.

----- 그러하지 -----
-----.

2. -----

-----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제43조에 따른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 및 제51조에 따른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한 후 특별점검을 실시 할 것

제147조(점검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사항) 공항운영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48조(점검 결과의 확인) ① 공항운영자는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검사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9조(점검기록의 보관) 공항운영자는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7조(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 ① (생략)

② 공항운영자는 정부기관에 의

4. -----

----- 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7조(점검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사항) ----- 제146조-----

-----.

1. ~ 4. (현행과 같음)

제148조(점검 결과의 확인) ① ----- 제145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49조(점검기록의 보관) ----- 제148조-----

-----.

제157조(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여 달리 지휘 통제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운
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에 지휘책
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초기대
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159조(공항 비상계획의 협의 및
훈련) ① (생략)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
에 열거된 기관 및 관련자가 비
상계획의 수립 및 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
의 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⑥ 공항운영자는 제5항제1호의
따른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훈련실시일 최소 14일전까
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
방항공청장에게 훈련실시계획
을 알리고, 공항안전검사관의
배석 하에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⑦ (생략)

-- 제1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9조(공항 비상계획의 협의 및
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⑥ ----- 제5항제1호에

-----.

⑦ (현행과 같음)

제165조(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시 준수사항) ①·② (생략)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공항운영규정에 다음 각 목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의 명시

가. (생략)

나. 원활한 위험요인관리와 위험성 평가

다.·라. (생략)

마. 사고와 준사고의 초등조치

바. ~ 자. (생략)

4. ~ 6. (생략)

④ ~ ⑥ (생략)

⑦ 공항운영자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안전평가는 다음의 4단계의 안전평가 처리절차(별표 14)에 따라 진행된다.

제165조(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시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위험요인 관리와 위험도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 초등조치

바. ~ 자.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위험도 관리-----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생략)

나. 제2단계 : 위험요소 식별
절차 이행

다. 제3단계 : 위험평가 및 위험저감절차 이행

라. 제4단계 : 위험저감 방안
이행 계획 마련 및 수행된
안전평가에 대한 결론 도
출

5. (생략)

6. 위험요소 식별절차(Hazard I
dentification Procedure)

가. 공항운영자는 사후적, 예
방적, 예측적인 안전데이
터의 수집 방법을 통하여
위험요소의 효과적인 수
집, 기록, 조치 및 피드백
에 대한 처리절차를 수립
· 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
에서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별표 13에서
정한 공항운영분야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항

가. (현행과 같음)

나. ----- 위해요인 -----

다. ----- 위험도 평가 및
경감 -----

라. ----- 경감조치 -----

5. (현행과 같음)

6. 위해요인 -----

가. -----

위해요인-----

나. -----

----- 별표 13에 따
른 -----

----- 다음-----

공안전장애 발생보고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다. 항공안전장애 발생보고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입주업체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목격한 경우

-----.

(1) ~ (5) (현행과 같음)

다. -----

-----.

(1) ~ (7) (현행과 같음)

(8) -----

<위험 관리절차 (Risk Management)>	<위험도 관리절차 (Risk Assessment)>
장비, 재산, 인명 또는 조직의 <u>위험</u>	장비, 재산, 인명 또는 조직의 <u>위해</u>
<u>위험요인</u> 에 따른 결과의 심각성	<u>위해요인</u> 에 따른 결과의 심각성
<u>발생 빈도</u> 는?	<u>발생 가능성</u> 분석
위험의 결과가 허용가능하고 조직의 기준내에 있는가?	위험도 결과가 허용가능하고 조직의 기준 내에 있는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위험요인 수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용 위험의</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위해요인 수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용 위험도</div> </div>
<p>7. <u>위험 평가 및 저감절차</u>(Risk Assessment) : 공항운영자는 <u>위험요소</u>의 식별,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u>위험관리</u>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p> <p>8. (생략)</p> <p>9. 제2호에 따른 수용성 검토는 제4호에서 제시된 안전평가 처리절차를 따른다. 다만, 2단계 <u>위험요소</u> 식별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u>수용성검토표</u>(별</p>	<p>7. <u>위험도 관리</u>----- ----- <u>위해요인</u>----- ----- -- <u>위험도 관리</u> ----- -----.</p> <p>8. (현행과 같음)</p> <p>9. ----- ----- ----- -- <u>위해요인</u> ----- ----- <u>수용성 검토표</u>-----</p>

표 15)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⑧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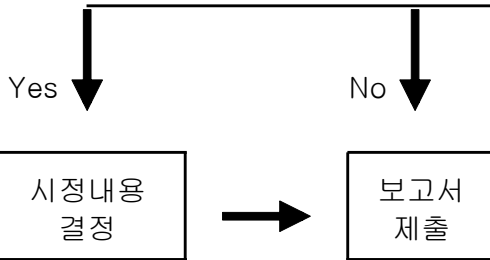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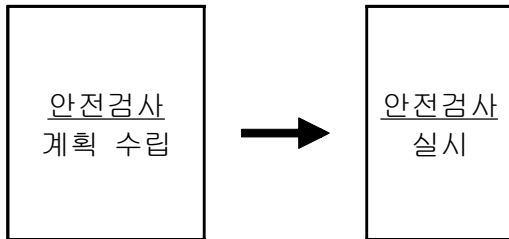
1. (생략)

2.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

가. ~ 다. (생략)

라. 감사절차 및 감사내용

(1) 감사절차



(2) (생략)

3. 변경관리절차(The Management of change) : 공항설계, 운영절차, 장비 등 변경 시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의 유지를 위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⑧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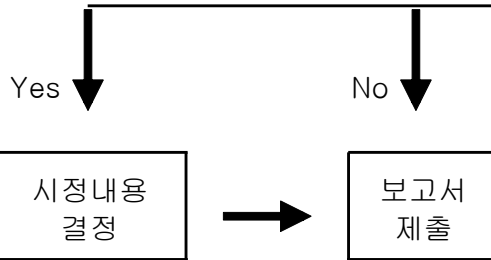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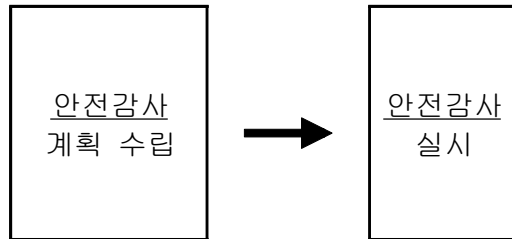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1)



(2) (현행과 같음)

3. 변화관리절차-----

하여 안전성을 검토·평가하기 위한 변경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4. (생략)

⑨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안전증진활동을 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가. (생략)

나. 안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신규 임용(초기), 정기,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기교육, 정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초기교육 : 신규 담당자에게 SM 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으로, 3일 이상을 시행한다.

----- 변화관리절차 -----
-----.

4. (현행과 같음)

⑨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대
하여 분야별로 -----
- 보수 등의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
-----.

(1) 초기교육훈련 : 신규 담당자에게 SM 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3일 이상 시행

(나) 정기 및 보수교

육 : 초기교육의
재교육 또는 새
로운 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필
요한 지식과 기
술을 전수하는
교육으로, 2일
이상을 시행한
다.

<신 설>

2. (생략)
3. 협력적인 안전문화의 진흥
가.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한 실천하
는 문화적 자세를 견지한
다.

(1) ~ (3) (생략)

(2) 정기 및 보수교육

훈련 : 초기교육훈
련의 재교육 또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
하는 교육훈련을 2
일 이상 시행

2. (현행과 같음)
3. -----
가. -----

-.

(1) ~ (3) (현행과 같

(4) 비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 조성

나. (생략)

제170조(운전승인의 거부 또는 취소)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전승인을 거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4. (생략)

제187조(급유작업 등) ① (생략)

음)

(4) 공정문화 (Just Culture)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운영체계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

나. (현행과 같음)

제170조(운전승인의 거부 또는 취소) -----

--.

1. (현행과 같음)

2. 제174조-----

3. 4. (현행과 같음)

제187조(급유작업 등) ① (현행과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급유작업을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는지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와 급유 차량·장비 소유자는 급유 또는 배유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절차를 「공항 내 위험물 취급매뉴얼」에 부합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91조(규정 위반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항공업무 수행자는 문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규정 위반 사항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3조(세부운영규정의 제정) 공항운영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공항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관련기관 및

같음)

② -----

----- 제1항에 따른 -----

-----.

③ -----

---- 절차를 「공항 내 위험물 취급매뉴얼」 -----
-----.

1. ~ 6. (현행과 같음)

제191조(규정 위반자에 대한 교육) ① -----

----- 받은 날 -----

-----.

② (현행과 같음)

제193조(세부운영규정의 제정) --
----- 제6장에 따른 공항 -----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
----- 관련 기관 -----

업체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배포·공지하여야 한다.

제201조(비상대응절차 수립) ①·
② (생략)
③ 운영자는 비상대응절차를 수
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자
료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3조(종사자 자격기준) (생
략)
② (생략)

제4절 보안관리

<신설>

제5절 보칙

<신설>

제272조(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
력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의
단축은 BHS 운전 또는 유지보
수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의 교
육시간을 1/2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초기교육훈련 과정
의 이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

-----.

제201조(비상대응절차 수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자
료를 지방항공청장에게 -----
-----.

제213조(종사자 자격기준)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절 보안관리

<삭제>

제4절 보칙

제272조(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목

----- 시
간-----
-----.
③ 제1항에 따른 -----

와 같다.

1. 2. (생략)

④ (생략)

제274조(교관의 임무) ①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BHS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2. 교육 기자재 및 교재 준비

3. BHS 종사자 교육실시

4. 교육생 평가

5. (생략)

②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74조(교관의 임무) ① 교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교육훈련과정 --

2. 교육훈련 -----

3. ----- 교육훈련 실시

4. 교육훈련생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